	전임교원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1991. 1. 28.
		최종개정일자	2022. 03. 01.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포과학대학교(이하 " 대학" 이라 한다)교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원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학의 모든 전임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임교원의 정의) ①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14.6.23〉

②제 1항의 비전임교원으로 명예교수, 석좌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외국인교원, 강사 및 조교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6.23〉

제4조(겸직금지) ①대학의 교원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교원이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타 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기관위촉에 수락 또는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초 1개월 전에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년) 대학 교원(총장 제외)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6조(인사발령의 효력 및 소급금지) ①대학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교원의 인사발령일자는 원칙 적을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①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교원인사위원회는 정관 제48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임용대상자의 전형
2. 임용대상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3. 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 및 면접에 관한 사항

제3장 임 용

제8조(총장의 임명) 대학의 총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교육부에 보고한다.

제9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07.26〉

제10조(신규채용방법) ①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학과장이 결원에 대한 충원요청〈별표 5〉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제이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 12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심사기준은 대학 교원채용 심사배점기준표〈별표 1〉에 의한 서류 및 면접심사〈별표 4〉에 의한다.

③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신규채용 절차) ①신규채용 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선정, 결과통보 및 임용 등의 순으로 한다.

②총장은 늦어도 지원 마감일 1개월 전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 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2조(특별채용)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국내 . 외에서 학술업적(연구 및 교육)이 탁월한 자
2. 국내 . 외의 권위 있는 학술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인을 받은 자
3. 전공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 실무경력, 독보적 기술.기능을 보유한 자(학위 소지 여부에 상관없음)
4. 외국인으로서 교수 능력 또는 연구능력이 우수한 자
5. 신설학과에 임용하는 자

②교원특별채용에 따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위해 총장의 자문기구로써 전형위원회를 두며,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한다.

제13조(신규교원의 자격 및 임용) ①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회 및 교육부에 보고한다. 〈개정 2019.07.26〉

제14조(구비서류) ①대학의 신규교원(단,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제외)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임용지원서 2부.〈개정 2014.6.23〉
2.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2부〈개정 2014.6.23〉
3. 경력증명서 2부〈개정 2014.6.23〉
4. 해당 분야의 자격증 사본 2부〈개정 2014.6.23〉
5. 연구실적 목록 및 실적물(최근 4년 이내의 논문 및 제작물) 각 1부
6. 자기소개서 2부〈개정 2014.6.23.〉
7. 강의계획서 2부〈신설 2015.5.4.〉

제15조(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①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1. 신규임용 심사기준 제 . 개정 심의
2. 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3. 신규채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신규채용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중 1/3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16조(신규채용 심사방법) ①신규교원의 채용 심사는 다음의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고한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실기능력) 등의 심사
3. 서류심사 총점 100점에서 총평점이 70점 이상자에 한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하여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5.4.〉
4. 면접심사 총점 100점에서 총평점이 90점 이상자에 한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하여 우리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5.4.〉
5.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②기초심사, 전공심사는 '위원회'에서 한다.〈별표 2,3〉

③신규교원의 임용 시 면접심사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별표 3,4〉

제1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기존.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 끝나고<완료된 날로부터>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경우<에 그>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및 사직처분을 받은 날<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8조(계약제 임용) ①전임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계약제로 임용한다.

②계약제로 임용할 때에는 직명,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는 〈별표 6〉에 정한 서식에 의한다.

제19조(계약제 임용기간) ①계약제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 정년보장 교원〈개정 2015.5.4.〉
2. 부교수 : 3년〈개정 2015.5.4.〉〈개정 2018.12.17.〉〈개정 2022.03.01.〉
3. 조교수 : 2년(신규임용 시는 2년, 재계약 시는 2년)〈개정 2015.5.4.〉〈개정 2018.12.17.〉〈개정 2022.04.01.〉

※계약기간 중 직급이 변동될 경우 그때부터 다시 계약 임용한다.

② 급 여 : 대학 보수규정에 따름〈개정 2018.12.17.〉

③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④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학생상담 및 지도 학교 발전 등에 관한 사항

⑤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계약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제20조(임용시기 및 공채원칙)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매 학년 초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1조(임용절차) 본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발령과 함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임용의 경우를 제외한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발령통지서로 임명장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당연면직) 〈삭제 2009.9.29〉

제23조(의원면직) 〈삭제 2009.9.29〉

제24조(재임용) 〈삭제 2009.9.29〉

제25조(재임용 임기) 〈삭제 2009.9.29〉

제26조(교수업적 평가) 〈삭제 2009.9.29〉

제4장 승진 및 재임용

제27조(임용기간) 대학의 교원은 직급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용한다.
〈개정 2009.9.29〉〈개정 2012.8.21〉

1. 교수 : 정년보장
2. 교수 : 〈삭제 2015.5.4.〉
3. 부교수 : 3년〈개정 2015.5.4.〉〈개정 2018.12.17.〉〈개정 2022.03.01.〉
4. 조교수 : 2년〈개정 2015.5.4.〉〈개정 2018.12.17.〉〈개정 2022.03.01.〉

제28조(승진 및 재임용의 시기)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개정 2009.9.29〉〈개정 2012.1.01〉

제29조(승진)〈개정 2012.8.21〉

①교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직위별 최저승진소요 연한에 달한 자로서 연구실적 등 승진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부교수에서 교수 : 6년 이상〈개정 2015.5.4.〉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이상〈개정 2015.5.4.〉

②제1항의 승진소요 년 수는 대학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③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④교수 승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교원 전체의 20% 이내로 한다.〈신설 2015.5.4.〉

제30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승급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 에 있는 자
2. 징계회부중인 자
3. 징계처분의 집행의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가. 승진임용 :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나. 승급 :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4. 교원이 승진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승진임용일에 승진하지 못했을 경우 1년 이내에는 승진할 수 없으며, 재심사는 다음 연도 승진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01〉〈개정 2018.12.17.〉

제31조(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요건) 교원은 승진 및 재임용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9.29〉

①승진임용은 현 직급 내에서 발표한 연구실적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은 600% 이상,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은 600% 이상 〈개정 2012.1.01.〉〈개정 2018.12.17.〉〈개정 2019.07.26〉

② 조교수 재임용은 현직급 임용기간 내에서 발표한 연구실적 매년 100% 이상 〈신설 2019.07.26〉

③ 부교수 재임용은 현직급 임용기간 내에서 발표한 연구실적 200% 이상 〈신설 2019.07.26.〉 〈개정 2022.03.01.〉

제31조의 2(재임용)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한다.〈개정 2018.12.17.〉

제31조의 3(재임용심사) 〈신설 2018.12.17.〉

① 재임용대상 교원이 제31조(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요건), 제32조(승진 및 재임용절차)의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한다.

② 총장은 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③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날짜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의 3(재임용 임기) 교원의 임용임기는 제 27조의 임용기간에 따른다.〈개정 2009.9.29〉

제32조(승진 및 재임용 절차) 교원 업적평가 점수는 임용계약기간 중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70/100점 이상을 얻은 자로 한다.〈개정 2009.9.29.〉〈개정 2012.1.1.〉〈개정 2015.5.4.〉〈개정 2019.07.26〉〈개정 2022.03.01〉

제32조의 2(교원업적평가) 〈개정 2009.9.29〉

①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정년보장 등 교원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2.1.1〉

②교원업적평가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한다.〈삭제 2014.6.23〉

제5장 연구실적 심사기준

제33조(연구실적심사) <개정2018.12.17.>

①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시에 제출되는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급 이상에 게재된 논문,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실적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34조(구성) 〈개정 2009.9.29〉

①연구실적심사는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직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단, 1인은 타 대학 교수로 한다)

②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점은 각 실적물 공히 심사자 전원 '우(B)' 이상 이어야 한다.

제35조(심사대상) 〈개정 2009.9.29〉〈개정 2018.12.17〉

①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저서 및 역서(출판된 것에 한함)
2. 학회지
3. 대학논문집
4. 학술발표대회 논문집(SCI, SCIE, SSCI, A&HCI, SCOPUS급 이상)
5. 정기간행물(학술지로 공인받은 것에 한함)
6.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창작, 발표, 전시, 입상 등
7. 산학협력연구(산학협력연구를 통한 연구실적)

②제출된 연구실적물은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③<삭제 2018.12.17〉

제36조(인정 환산율)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은 <별표5>에 따른다.〈개정 2019.07.26〉

제6장 보 직

제37조(보직) 대학의 보직은 대학의 직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8조(임기) 보직자의 임기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장 보 수

제3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정관 45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신분보장

제40조(휴직) 교원의 휴직사유와 기간, 휴직교원의 신분과 처우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1조(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관에 정함 바에 의한다.
제42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2조 2(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신설 2009.9.29〉

1. 사망할 때
2. 정년이 달한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정관 및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42조의 3(의원면직)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09.9.29〉

제9장 복 무

제43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상 벌

제44조(포상) ①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 될 때
3.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뚜렷한 공적이 인정될 때
4.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명예를 현저히 드높였을 때

②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총장이 심사, 결정한다.
제45조(징계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대학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6조(징계종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처리를 한다.

제47조(징계절차) 징계는 절차 및 재심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장 보 칙

제 48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준용한다.

제 49 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 (경과조치) 이 규정의 32조, 32조의2, 36조는 2010년 09월 01일부터 재임용과, 2010년 10월 01일 승진임용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경과조치) 2012년 01월 01일 시행 개정된 이후 1년 동안은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중에서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 08. 2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31조(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요건) 적용은 2019년 9월 1일자 신규 임용자 및 재임용 대상자 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적용은 2019년 연구실적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의 적용은 2022년 3월 1일자 신규임용자, 재임용자,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원채용 심사배점 기준표

1. 초빙분야와 전공의 일치성

초빙분야와의 전공 일치 여부		
전공일치여부	가(可)	불(不)
특기사항(사유)		

※ 전공불일치 지원자는 지원자격 미달자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서류심사〈개정 2015.5.4.〉<개정2018.11.15>

구분	심 사 기 준	배 점	비 고
연구 실적	200% 이상	40	연구실적의 質에 따른 심사위원이 배점 범위 내 재량 부여
	150이상~200% 미만	30~39	
	100이상~150% 미만	20~29	
	100% 미만	0~19	
1. 평가대상 연구실적 : 최근 4년 이내 의 논문, 전공 역·편·저서 2.학술지 등급별 가중치 - 박사학위논문 200%, 석사학위논문 100% [기관에 관계없음] - 국제학술지 150%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100% - 일반 학술저널 등 70% 3. 저서 100% 4. 저자수(n)에 따른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 단독저자 : 100% - 2인 70%, 3인 50%, 4인이상 1/n			
교육 경력	3년 이상	20	교육경력 기관, 직위에 따른 심사위원의 배점 범위 내 재량 부여 가능 - 전임 : 100% - 겸,초빙 : 90% - 시간강사 : 80%
	2~3년 미만	16~19	
	1~2년 미만	11~15	
	1년 미만	1~10	
	0년	0	
산업체 경력	산업체 경력 5년 이상자	30	산업체근무 기관, 직위, 업무난이도에 따른 심사위원의 배점 범위 내 재량 부여 가능
	산업체 경력 3~5년 미만	21~29	
	산업체 경력 1~3년 미만	11~20	
	1년 미만	1~10	
	0년	0	
학과발전 및 잠재역량	① 자기소개서에 기초한 교수로서의 자질, 인화정도, 협조성, 리더십 등 ② 학과발전계획에 기초한 대학 및 학과 발전 기여가능성, 차별성, 잠재력 등	10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부여가능하나, 지원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및 수상실적	- 전공분야 국가자격증(면허증) 혹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주관 대회 수상자	우대 가점 (최대 10점)	자격증 혹은 면허증 개수, 질에 따른 심사위원 재량의 점수 부여
합계		100	

3. 면접심사

구 분	평 점	비 고
인물 및 교육관	15	
표 현 력	15	
지 도 력	15	
전 문 성	35	
창 의 성	20	
평 점 합 계	100	

〈별표 2〉

초빙분야와 전공 일치성

지원학과 :　　지원자 성명 :

초빙분야와의 전공 일치 여부		
전공일치여부	가(可)	불(不)
특기사항(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　소속 :

성명 :　　㊞

〈별표 3〉

교원채용 서류심사 평점표

지원학과 :　　지원자 성명 :

구　　분	심　사　기　준	평 점	비　고
연구실적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학과발전 및 잠재역량			
자격증 및 수상실적			
계			

년　　월　　일

(　　학과)심사위원

성 명 :　　㊞

〈별표 4〉

교원채용 면접 평점표

지원학과 :　　지원자 성명 :

구　　분	평　점	비　고
인물 및 교육관		
표　현　력		
지　도　력		
전　문　성		
창　의　성		
평 점 합 계		

년　　월　　일

면접위원 직위 :

성명 :

< 별표 5 >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및 환산율

□ 연구실적 인정범위

1. 일반계열 : 학술논문, 학술저서

2. 예체능계열 : 학술논문, 학술저서, 연구발표, 전시, 입선

□ 연구실적 구분

1. 학술논문

가.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외 공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SCI, SCIE, SSCI, A&HCI, SCOPUS급 이상

나. 국내저명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다. 기타학술지

○기타 : 국내·외 비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학회지 등 정기학술 간행물)

○대학논문집

□ 학술논문 1편의 배점

구 분		배점
국제저명학술지	SCI, SCIE, SSCI, A&HCI, SCOPUS	200
국내저명학술지		150
기타학술지		100

○ 환산율

– 논문에 교신저자임을 증명하는 표기가 없는 경우, 교신저자는 게재승인서(acceptance letter) 등 교신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정환산율표 Ⅰ : 국제저명학술지>

저자 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공동저자
1인	100%	–
2인	85%	70%
3인	70%	50%
4인 이상 6인 이하	55%	30%
7인 이상 17인 이하	(1/n×180+20)%	1/n×180%
18인 이상	30%	10%

<인정환산율표 Ⅱ : 국내저명학술지 및 기타학술지>

저자 수	제1저자 및 공동저자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40%
5인	33%
6인	28%
7인	25%
8인	22%
9인	20%
10인 이상	18%

2. 학술저서

- 학술저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학술저서로서의 인정 여부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학술저서의 인정환산율은 <인정환산율표 Ⅱ>와 같음.

구 분	배점
국제학술저서	200점
국내학술저서	100점

○ 학술저서 인정기준

- 대학수준 이상의 국내외 학술저서(전문 학술저서 및 전공 교과서)이어야 함.
-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문대학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 정리한 교재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출판된 것에 한함)
- ISBN이 있어야 함.
- 분량은 150페이지 이상(목차 및 색인 포함) : 200자 원고지 기준 600매 이상
- 참고문헌, 각주 등 전공분야별 저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반드시 초판이어야 하고, 개정판이나 증보판은 인정하지 않음.
- 주요 내용이 과거 논문이나 다른 저서 형태로 발표된 것은 제외
- 전공 관련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상대의 저서는 제외
- 지침서, 문제집, 편저 및 역서는 인정하지 않음.
- ISBN이 있더라도 연구소의 연구보고서 형태의 저서는 제외